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672호

2026년도 창업도약패키지(딥테크 특화형) 창업기업 모집공고

딥테크 분야 도약기 창업기업의 성장과 도약을 지원하는 『**2026년도 창업도약패키지(딥테크 특화형)**』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 합니다.

2026년 1월 6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K-Startup 누리집 가입 시 실명인증이 되지 않는 경우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사전 실명등록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접수 전 필히 등록해 주시길 바랍니다.

① 실명등록 대상 : 개명인, 외국인, 미성년자 등 인터넷 실명 확인 불가능자

② 실명등록 경로 : www.siren24.com (☏1577-1006)

* 실명 등록에 최대 3일까지 소요될 수 있음

* K-Startup 누리집 - 고객센터 - 온라인매뉴얼 - 일반매뉴얼 – K-Startup 창업기업 실명등록 매뉴얼 참고

※ 최종 선정 통보된 예비선정자(기업) 통보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2026년 창업도약패키지(딥테크 특화형)」 '협약체결 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공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동의 시, 제출서류 중 일부를 별도로 발급받지 않아도 자동 연동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 4. 접수방법 - 제출서류 참고

2026년 창업도약패키지 창업기업 모집은

① 딥테크 특화형, ② 일반형, ③ 투자연계형 3가지 유형으로 분리하여 공고하며,

3개 유형에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1개 유형만 수행 가능(동시수행 불가)합니다.

< 2026년 창업도약패키지 유형별 지원내용 및 규모(안) >

유형	① 딥테크 특화형	② 일반형	③ 투자연계형
지원대상	딥테크 5대 분야 도약기 창업기업	전분야 도약기 창업기업	투자유치 실적 보유 비수도권 도약기 창업기업
지원규모	75개사	300개사	50개사
지원금	사업화자금 최대 3억원	사업화자금 최대 2억원	사업화자금 최대 2억원
공고(예정)	'26.1.6	'26.1월말	'26.5월

* 유형별 지원규모 및 공고(예정)시기는 변동 가능하며, 상세한 내용은 유형별 공고문을 참조

** 도약기 : 업력 3년 초과 7년 미만(신산업 분야는 10년 이내)

※ 본 공고는 "딥테크 특화형" 공고이며, "일반형" 및 "투자연계형"은 별도 공고(예정)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딥테크 분야 유망 기술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도약기 창업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혁신 및 제품·서비스 고도화 지원

□ **지원대상** : 딥테크 5대 분야*에 해당하는 창업 3년 초과 10년 이내 도약기 창업기업

* 딥테크 5대 분야 : AI·빅데이터, 로봇,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 융합기술의 경우 핵심기술 보유 분야로 택1 자율 선택(중복지원 불가)

*** 단, 업력 미충족 기업 중 '23~'25년 초기창업패키지, '23~'25년 재도전성공패키지, '23~'24년 창업중심대학(초기 창업기업) 참여기업은 [붙임 5]의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패스트트랙'으로 신청 가능

□ **협약기간** : 협약시작일로부터 10개월 내외 ('26. 3월 ~ '26. 12월 예정)

□ **지원분야 및 선정규모** : 딥테크 5대 분야, **총 75개사 내외**

< 지원분야별 선정규모 >

기술분야	빅데이터·AI/로봇		바이오·헬스	미래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선정규모	20개사 내외	20개사 내외	20개사 내외	15개사 내외
주관기관	광주창조경제 혁신센터	서울창조경제 혁신센터	충북창조경제 혁신센터	충남창조경제 혁신센터

* 단, 신청규모 및 경쟁률에 따라 분야별 선정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 1개 주관기관을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선택한 주관기관에서 선정평가 진행

□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평균 1.7억원 내외, 최대 3억원), 창업프로그램 등

< 지원내용 >

구 분	지원내용
사업화 자금	• 창업기업 사업모델(BM) 혁신, 제품·서비스 고도화 등 소요자금 지원
창업프로그램	• 기술이전, 글로벌 진출지원 등 딥테크 분야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2 세부지원내용

□ 세부**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및 주관기관이 제공하는 창업프로그램 등

<table>
<tr><th>구분</th><th>지원 세부 내용</th></tr>
<tr><td>사업화 자금</td><td>

•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사업모델(BM) 개선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평균 1.7억원 (최대 3억원) 지원**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 자금(정부지원사업비) 차등 지원
** 사업화 자금(정부지원사업비)은 신청기업의 신청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

• **총사업비 = 정부지원사업비 + 자기부담사업비***

* 창업기업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1)지방우대 지역(특별지원 지역, 우대지원 지역, 일반지역)과 (2)지방우대 비해당 지역으로 구분하며, 자기부담사업비 비율 상이
** 창업기업 사업장 소재지는 본점을 기준으로 함

- **(지방우대 지역)** 인구감소, 지역낙후도 등 반영하여 167개 시구군을 ①특별지원 지역, ②우대지원 지역, ③일반지역으로 구분(지역분류는 [붙임6] 참고)
  * ① **(특별지원 지역)**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중 균형발전 하위지역 및 예타 낙후도평가 하위 지역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40개 시·군
  ② **(우대지원 지역)** 특별지원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44개 시·군
  ③ **(일반지역)** 비수도권 지역 중 특별·우대지원이 아닌 83개 시·군
- **(지방우대 비해당 지역)** 지방우대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 창업기업 사업장 소재지에 따른 **자기부담사업비 비율** >

구분	특별지원 지역	우대지원 지역	일반지역	지방우대 비해당 지역
자기부담사업비	**10% 이상**	**20% 이상**	**25% 이상**	**30% 이상**
정부지원사업비	90% 이하	80% 이하	75% 이하	70% 이하

• **자기부담사업비는 현금 및 현물로 구성**(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비율 상이)
* 현물은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고용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 총사업비 구성 >

구분	총사업비	정부지원사업비	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	
			현금	현물
특별지원 지역	**100%**	총사업비의 90% 이하	총사업비의 10% 이상 (현금 또는 현물)	
우대지원 지역	**100%**	총사업비의 80% 이하	총사업비의 10% 이상	총사업비의 10% 이하
일반지역	**100%**	총사업비의 75% 이하	총사업비의 10% 이상	총사업비의 15% 이하
지방우대 비해당 지역	**100%**	총사업비의 70% 이하	총사업비의 10% 이상	총사업비의 20% 이하

</td></tr>
</table>

< **사업비 구성 예시** (정부지원사업비 3억원인 경우) >

구분	총사업비 (A=B+C+D)	정부지원사업비 (B)	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	
			현금(C)	현물(D)
특별지원 지역	333,340천원	300,000천원	33,340천원	
	(100%)	(90%)	(현금 또는 현물 10%)	
우대지원 지역	375,000천원	300,000천원	37,500천원	37,500천원
	(100%)	(80%)	(10%)	(10%)
일반지역	400,000천원	300,000천원	40,000천원	60,000천원
	(100%)	(75%)	(10%)	(15%)
지방우대 비해당 지역	428,580천원	300,000천원	42,870천원	85,710천원
	(100%)	(70%)	(10%)	(20%)

* 정부지원금은 창업기업이 신청한 사업비 규모를 초과하여 배정 불가

** 신청 시 사업계획서상 '사업비'와 시스템 접수 '사업비'가 상이할 경우, **K-Startup 시스템 접수 기준으로 평가**

*** 추후 확정된 정부지원금 및 지방우대 여부 등에 따라 창업기업의 자기부담 사업비 및 비율이 변경 될 수 있음

창업 프로그램

- **(공통 프로그램)** 후속투자 유치, 글로벌 진출·확대 지원

구분	세부내용
후속투자 유치	투자단계 및 산업군별 IR 운영, 투자 애로 상담회 운영, IPO 주관사 네트워킹 및 출구전략 컨설팅 등
글로벌 시장 진출·확대	글로벌 선행기술조사 지원, 글로벌 인증 획득 지원, 글로벌 투자사 연계 투자 IR 운영,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등

- **(특화 프로그램)** 주관기관의 강점과 특성을 반영하여 딥테크 분야별 창업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

  - 기술이전 프로그램, 오픈이노베이션, 장비·인프라 지원, 실증지원 등

※ 주관기관별 세부 지원내용은 [별첨 3] 주관기관 소개자료 참고

후속지원 프로그램

- **(기술보증기금 보증상품 연계)** 협약종료 이후 최종 성과평가 등급 '우수' 이상이면서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조건을 충족하는 창업기업을 추천

* 연계 보증상품 및 일정 등 세부 내용은 최종 평가 시점에 별도 안내 예정

3 신청자격 및 요건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동법 제2조제2호부터 제2조제3의2까지의 각 호의 정의에 따른 도약기 창업기업 또는 패스트트랙 해당기업

◦ **(도약기 기업)** 딥테크 5대 분야* 제품 및 서비스를 보유한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초과 10년 이내인 자(기업)**

* 딥테크 5대 분야 : AI·빅데이터, 로봇, 바이오·헬스, 미래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 **(패스트 트랙 기업)** **'23~'25년 초기창업패키지, '23~'25년 재도전성공패키지, '23~'24년 창업중심대학**(초기 창업기업) **참여기업** 중 [붙임 5]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딥테크 5대 분야* 제품 및 서비스를 보유한 자(기업)

* 딥테크 5대 분야 : AI·빅데이터, 로봇, 바이오·헬스, 미래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 신청 자격 세부 조건>

▶ **신청가능 업력** : **2016. 1. 6. ~ 2023. 1. 5. 기간내 창업한 기업**(창업 3년 초과 10년 이내)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사업 개시 및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개인·법인)을 보유한 경우,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신청 자격 적합 여부 결정 **([붙임 4] 창업 여부 기준표를 참고하여 신청 전 필히 확인)**
  *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 기준으로 이전에 개시한 사업자(개인, 법인)와의 창업 여부 확인 필수
- 본점과 지점이 있는 경우, 본점 사업자로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한 경우 본점 기준으로 요건 검토 예정
  ★ 서류평가 통과자 대상으로 '창업기업확인서' 등 창업 업력 및 창업기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 제출 요청 예정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26.1.1.)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서 서식 내 창업 기준 충족일이 모집공고일 이전일 것 (모집공고일 당일 포함)

□ **신청 제외 대상**

* 법인인 기업의 경우, 법인과 대표자 모두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① 조건 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4.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② 조건 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③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기업)

< ③ 조건 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까지 환수금등을 전액 반환 완료한 자
2. 환수금등에 대해 회생 또는 파산절차에서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은 자
3. 환수금등에 대해 분할납부를 승인받아 정상납부 중인 자 (분할상환금을 연속 또는 누적하여 1회 이상 미납한 경우는 환수금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봄)

④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붙임 1]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참조)

⑤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붙임 2-1]에 총 3회 이상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자(기업) ※ 중단 (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⑥ 사업연도를 불문하고, [붙임 2-2]에 명시된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자(기업) ※ 중단 (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⑦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붙임 3] 참고 ※ 중단 (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 「2026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648호」 내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사업 중 시제품 제작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예비)창업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사업. 단, 공고사업과 '동일연도'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이 아닌 경우 또는 지자체 지원사업은 협약의 시작·종료일 등 협약 잔여기간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⑧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⑨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⑩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 (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폐 개발업,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

⑪ 2026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전담조직의 장,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기업)

⑫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⑭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4 접수방법

□ 접수 기간 : ’26. 1. 6.(화) ~ 1. 27.(화) 16:00까지

< 유의 사항 >

①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에 **‘K-Startup 누리집’ 가입 및 사업 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 신청·접수는 **16:00 정각에 종료**되며, 마감시간(16:00)까지 “제출완료”한 기업에 한해 평가 참여 (신규 신청 불가)

② 온라인 신청서 작성 이후 **‘제출완료’ 버튼을 클릭**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됨

③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접수마감된(’26.1.27.(화) 16:00) 이후 사업계획서 등 일체 내용은 **수정 및 삭제 불가**

□ 접수방법

◦ K-Startup **누리집 온라인 신청·접수** (www.k-startup.go.kr)

- 신청·접수 시, K-Startup 누리집을 통해 ① **실명인증** 및 ② **기업인증**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에 **회원가입** 및 **실명인증 필요**

* **실명인증** :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개인 실명인증 진행 (외국인, 개명인, 미성년자 등 실명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전 실명 등록 및 적용 절차 진행 필수)

** **기업인증** : **(개인사업자)**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기업용), SCI기업실명인증, 국세청사업자 확인 4종 중 택1 / **(법인사업자)**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기업용) 2종 중 택1

*** 온라인 사업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별첨4] 사업 신청 매뉴얼’ 참고

< 유의 사항 >

① **반드시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타인이 신청하는 경우 탈락 처리**

② 창업기업은 사업 신청 시, **희망하는 1개의 주관기관 선택**

* 해당 주관기관에서 평가 및 사업비 관리, 창업프로그램 등 제공 (접수 마감 후 변경 불가)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1부** (별첨 1 양식)

* 모집공고에 첨부된 사업계획서 양식 활용 (그 외 양식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기타 제출서류 각 1부** (해당 시, 별첨 2 참고)

제출서류	제출 방법	비고
① 사업신청서	온라인 입력	-
② 사업계획서 ③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 신분증 및 동의서 (해당시)	파일 첨부	용량제한 30MB
④ 신분 확인 서류 ⑤ 사업자등록증명	공공마이데이터 **'동의' 시 서류(행정정보) 자동 제출**	공공마이데이터 **'미동의' 시 서류(별첨 2 참고) 별도 첨부**

* 대내·외 사정으로 서류(행정정보) 수집 과정에서 **일시적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나,** 해당 오류로 인한 **사업 신청 및 평가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단, **필요시** 평가 및 선정평가 등 과정에서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평가 및 선정절차

□ **평가 절차** : 총 2단계 평가 (서류 → 발표)를 통해 최종 선정

* 선정평가 운영 및 평가 일정, 평가 결과 등은 **선택한 주관기관**에서 안내 예정

< 창업기업 선정평가 절차(안) >

① 요건검토	② 서류평가	③ 발표평가	④ 최종 선정
자격기준 검토 및 서류평가 대상자 확정	제출한 사업계획서 토대로 서면 평가 (2배수 내외 선정)	창업기업 대표자 발표 및 질의응답 (30분 이내)	선정 확정 및 (협약체결확약서 제출) 정부지원사업비 심의 후 최종 공고
'26.1월	'26.2월	'26.3월	'26.3월

신청자(기업)의 요건검토는 창업진흥원 및 주관기관에서 상시 진행하며, 선정·협약 이후에도 신청자격 미충족 등이 확인되는 경우 탈락 처리 예정

※ 상기 일정은 신청자(기업)의 수 등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 방법**

① **요건검토** :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등 검토

② **서류평가** :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세부 항목 평가 및 발표평가 대상자 확정 (최종 선정규모의 2배수 내외)

- 서류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창업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을 제출받아 검토할 예정이며, 자격 관련 위배사항 발견 시 발표평가 대상에서 제외

* 창업기업확인서 발급이 필요한 기업은 발급기간(약 3주)을 고려하여 사전준비 필요, 창업기업확인서 제출처 등 **자세한 사항은 서류평가 통과자 대상 별도 안내예정**

③ **발표평가** : 제품·서비스 개발 동기, 시장진입 및 성과 창출 전략, 창업기업 대표자 및 팀원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발표평가는 창업기업 대표자(동 사업 신청자)의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제품·서비스에 대해 심층 평가

* 평가시간 : 30분 이내 (발표 15~20분 이내 + 질의응답)

** 발표평가는 대면평가 원칙

***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 통역사의 조력을 받거나,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의 참석·발표 허용(대표자 위임서 필요)

④ **최종선정** : 발표평가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대상자 선정

- **최종선정 통보일 다음날로부터 3일 이내**(3일차 17시까지, 휴일불산입) **창업도약패키지(딥테크 특화형) 협약체결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기간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선정이 취소되며 차순위자(후보자)에게 사업 참여 기회 부여

< 최종선정 대상자의 '협약체결확약서 제출' >

※ 최종 선정 통보된 예비선정자(기업) '협약체결확약서' 제출 요청*일 다음 영업일로부터 3일 이내(마지막 날 17시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창업도약패키지(딥테크 특화형)」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문자 또는 이메일을 통해 개별 발송 예정이며, 위 발송일 기준

※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할 경우, 확약서 제출 이전에 신청한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및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창업사관학교)의 선정 절차(확약서 제출 전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제외'됩니다.

*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민관공동 창업자발굴 육성사업(TIPS 창업사업화, 프리팁스, 포스트팁스), 창업중심대학, 재도전성공패키지, 제품화 ALL-In-One팩, 첨단제조 스케일업 지원사업 등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

※ **단,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및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창업사관학교)에 이미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하여 협약체결 예정인 사업이 있는 경우, 최초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한 1개의 사업만 협약체결(수행)이 가능합니다.**

*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민관공동 창업자발굴 육성사업(TIPS 창업사업화, 프리팁스, 포스트팁스), 창업중심대학, 재도전성공패키지, 제품화 ALL-In-One팩, 첨단제조 스케일업 지원사업 등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

※ **제출한 '협약체결확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향후 사업 선정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모집분야별 선정규모 내에서 최종 지원기업을 선정하고, 창업기업별 정부지원사업비*를 배정하여 최종 확정 공고

* 창업기업 선정평가 결과 및 사업비 사용계획 적정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차등 배정

- 평가위원회에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창업기업은 주관기관 혹은 창업진흥원이 별도 현장실사를 진행할 수 있음

* 선정평가 결과 창업기업 역량이 본 사업 운영목적 및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 예정 규모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

□ 평가지표

◦ 창업 아이템의 제품·서비스에 대한 개선과제 및 방향, 성장전략, 대표자 및 창업기업 보유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주관기관별 선정 규모와 관계없이, 평가 단계별 취득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

< 서류·발표 평가지표 주요 내용 >

평가항목	세부 내용
문제인식	• 창업아이템을 개발하게 된 동기(문제인식), 해결방안(필요성) 등
실현가능성	• 기술우위 수준, 기술개발 역량, 기술개발(고도화) 가능성, 경쟁력 확보 방안 등
성장전략	• 창업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장진입 전략, 자금조달 방안 등
팀(기업) 구성	• 대표자 및 고용인력이 보유한(예정인) 기술역량과 노하우 등

□ 사업 운영일정 ※ 세부 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공고	⇨	창업기업 신청 · 접수	⇨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중소벤처기업부		K-Startup 누리집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26.1.6.		'26.1.6. ~ 1.27., 16시까지		~ '26.3월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선정 공지	⇦	창업기업 '협약체결확약서' 제출
창업기업,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K-Startup 누리집		K-Startup 누리집
'26.3~4월		'26.3월		협약체결확약서 제출 요청일 다음날로부터 3일 이내

⇩

사업수행	⇨	수시점검 (필요시)	⇨	최종보고 및 점검
창업기업		창업기업, 주관기관		창업기업,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협약일 ~ '26.12월 (10개월)		수시		~'27.2월

6 유의사항

◈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창업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① 동 사업은 창업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형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 사업비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② 동 사업비의 부정수급을 행할 경우 **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③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대표자, 창업기업)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사업 신청 과정에서 **제3자(컨설턴트 등)가 선정을 담보로 특정 사례를 요구하거나 접근해 온 경우, 아래 방법에 따라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창업진흥원 누리집(www.kised.or.kr) > 고객광장 > 제3자 부당개입 신고

④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 조치**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유의사항

◦ 동 사업 신청은 해당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하여야 하며, 동 사업 신청자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음

◦ 신청자는 K-Startup 누리집에 등록된 정보(전화번호·이메일 주소 등 연락처)를 현행화하여야 하며, 기재 오류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양지 바람

◦ 동 사업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사업계획서·증빙서류 등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 기재, 위조·변조·표절, 도용, 누락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될 수 있음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등)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3년) 및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짐

* 합의 하에 공동 작성한 동일·유사 사업계획서로 선정된 경우일지라도, 공동작성자 모두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함으로 판단하여 동일하게 평가대상 제외, 선정취소, 참여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동일·유사 여부의 판단은 본 공고에 따른 신청에만 국한되지 않고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모든 창업지원사업에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함

◦ '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과 동시수행(협약체결) 불가. 단, '26년도 이전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종료일 등 협약 잔여기간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 **(주의) 2개 이상 사업의 공고 기간이 겹쳐 중복으로 선정되는 경우, 반드시 1개의 사업을 선택하여야 하며, 최초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한 1개의 사업만 수행 가능**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창업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 선정 완료 후 공동·각자대표에 대한 신청자격을 재검토하여 신청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동 사업 신청자는 ’26년 동 사업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불가

◦ 국외 창업의 경우 동사업에 신청한 국외 창업기업에서 사업비 집행 등 비용 집행·처리·관리가 가능해야 하며, 불가능한 경우 선정 및 협약 취소

□ 평가 중 유의사항

◦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자격 확인 불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전 평가과정에 창업기업 대표가 직접 참여하여야 하고,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 통역사의 조력을 받거나,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의 참석·발표 허용(대표자 위임서 필요)

◦ 평가 단계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통보일 다음 날로부터 6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 1회에 한하여 평가를 운영한 주관기관에 신청 가능

◦ 주관기관은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창업기업 대표 동의하에 발표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 선정 후 유의사항

◦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할 경우, 확약서 제출 이전에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및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창업사관학교)의 선정 절차(확약서 제출 전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제외’ 처리됨

- 단,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및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창업사관학교)에 이미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하여 협약체결 예정인 사업이 있는 경우, 최초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한 1개의 사업만 협약체결(수행) 가능

◦ 제출한 협약체결확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향후 사업 선정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신청서·사업계획서·증빙서류 등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 기재, 위조·변조·표절, 도용, 누락한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자는 동 공고문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동 사업 세부관리기준」,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선정자에게 있음

◦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에 대한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의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정부지원사업비는 협약 후 분할하여 지급될 수 있으며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총 사업비가 관리·운영됨

◦ 동 사업의 수시·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창업기업 사업지원 중단 또는 동 사업의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 시, 협약취소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

◦ 협약기간 중 대표자가 구속되어 그 기간이 2주 이상 유지되어 부재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사업선정취소 또는 협약 해약,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 될 수 있음

◦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은 선정된 창업기업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 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비 지출(회계처리)이 가능하여야 함

* 지정 은행의 계좌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의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회사로 부터 계좌개설 불가 등의 금융거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협약체결 및 사업화 지원이 불가함

□ 선정자의 **의무 및 책임**

◦ 선정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동 사업 세부관리기준」,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선정자는 신청기업은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

◦ 선정자는 적법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수령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급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자기부담사업비(현금)을 창업진흥원이 정한 기한 내에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현물 투입이 있는 경우 해당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7 기타사항

□ **문의처**

◦ **(시스템 문의)** 국번없이 1357

◦ **(신청 등 사업 관련 문의)** 주관기관 담당자

분야	주관기관명	지역	문의처	사업설명회 일시 및 장소
AI·빅데이터, 로봇	광주창조경제 혁신센터	광주	062-364-9151 062-364-9143	-일시 : 26. 1. 12. (월) 14시 ~ -장소 : 온라인 ZOOM https://us06web.zoom.us/j/3242180815?pwd=uTL2KE9L8tI1PQe0wTiSSj6iyOErDd.1&omn=88492455494 -회의 ID: 324 218 0815 -암호: 1357
	서울창조경제 혁신센터	서울	02-749-9306, 9052, 9573 02-739-7264	- 일시 : 26. 1. 8. (목) 10시~ - 장소 : 온라인 https://us06web.zoom.us/j/87217852166?pwd=SlyLyAFps5OcUckaXKeY0vRjeFhAoK.1 - 일시 : 26. 1. 13. (화) 14시~ - 장소 : 서초 AICT 우수기업센터 - 일시 : 26. 1. 15. (목) 14시~ - 장소 : 서울창업허브 엠플러스
바이오·헬스	충북창조경제 혁신센터	충북	043-710-5920, 5927	- 일시 : 26. 1. 14. (수) 14시~ - 장소 : 온라인 ZOOM https://us06web.zoom.us/j/87034020319?pwd=Rj0qVT7PcOyvwPDjHrfBNQYqS3hqVG.1
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충남창조경제 혁신센터	충남	041-536-7890, 7832, 7887, 7812	- 일시 : 2026. 1. 9(금), 11:00~ - 장소 : 충남 아산시 희망로 100, KTX 천안아산역 2층, 충남창경센터 IR룸 (온라인 동시) https://us02web.zoom.us/j/81566432164?pwd=IriYHbbdj3WCwhHcbhGTsLUzqDrt7d.1

* 사업설명회 일정은 추후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붙임 1 지원 제외 대상 업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NO.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일반유흥주점업	56211
2	무도유흥주점업	56212
3	카지노 운영업	91242
4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5	그 외 경제질서,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붙임 2-1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 횟수 제한 사업 목록

○ **예비창업패키지**

○ **초기창업패키지**

○ **창업도약패키지**

○ **생애최초 청년창업('23, '24)**

○ **공공기술 창업사업화('23, '24)**

○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24)**

○ **창업중심대학**

붙임 2-2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 제외사업 목록

□ **사업연도를 불문하고 아래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자(기업)는 지원 제외**

○ **창업도약패키지 사업화지원**

* 대기업 협업 프로그램('21~'22년 에그. 씨앗, 이웃, 가치, 스타)로 지원받은 자(기업)도 신청 불가

** 단, 글로벌기업 협업 프로그램('19~'20년 창구, '20년 마중, 정글, 엔업) 및 창업도약패키지 성장촉진 프로그램('17~'21년)만 지원받은 자(기업)는 신청 가능

○ **창업중심대학**(도약기 창업기업)

붙임 3	2026년 동시수행 불가한 창업지원사업 목록

연번	창업지원사업명	소관 부처
1	• 예비창업패키지	중소벤처기업부
2	• 예비창업패키지(사내벤처팀)	중소벤처기업부
3	• 초기창업패키지(일반형)	중소벤처기업부
4	• 초기창업패키지(딥테크 특화형)	중소벤처기업부
5	• 초기창업패키지(투자연계형)	중소벤처기업부
6	• 창업도약패키지(일반형)	중소벤처기업부
7	• 창업도약패키지(딥테크 특화형)	중소벤처기업부
8	• 창업도약패키지(투자연계형)	중소벤처기업부
9	•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DIPS	중소벤처기업부
10	•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Global DIPS	중소벤처기업부
11	• 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TIPS 창업사업화)	중소벤처기업부
12	• 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프리팁스)	중소벤처기업부
13	• 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포스트팁스)	중소벤처기업부
14	• 창업중심대학	중소벤처기업부
15	• 재도전성공패키지	중소벤처기업부
16	• 제품화 ALL-In-One 팩	중소벤처기업부
17	• 첨단제조 스케일업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18	•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중소벤처기업부
19	• AI·디지털전환 혁신기업 해외실증 지원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	•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기후에너지환경부
21	•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22	• 민간투자기반 스케일업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23	• 청년식품 창업성장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24	• 관광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문화체육관광부
25	• 관광벤처사업 공모전	문화체육관광부
26	• 선도기업 연계 동반성장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27	• 스포츠산업 예비초기창업·창업도약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28	• 스포츠산업 창업중기 액셀러레이팅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29	• 예술분야 창업기업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30	• 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지원 사업	문화체육관광부
31	• (콘텐츠) 액셀러레이터 연계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32	• (콘텐츠) 투자 연계 창업도약	문화체육관광부
33	• 기창업자 경영개선자금 지원사업	통일부
34	• 소규모 신규 창업자 지원사업	통일부
35	• 해양신산업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	해양수산부
36	• 청년 산림창업 마중물 지원	산림청
37	• 경북·구미 방산혁신클러스터 전주기 방산 창업지원	방위사업청
38	• 대전 방산혁신클러스터 드론특화 창업 지원사업	방위사업청

붙임 4	창업 여부 기준표

신청기업구분	상세 구분			창업여부
개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	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 개시		창업아님
		이종		창 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창업아님 ★ * '20.10.7. 이전 창업은 경과조치 적용 여부 확인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성실경영실패자	창 업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창 업
법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성실경영실패자	창 업
		동종전환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또는 최대주주	창업아님 * '20.10.7. 이전 창업은 경과조치 적용 여부 확인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하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창 업
	자회사 여부	법인주주(임원 포함)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 * '22.6.28. 이전 창업은 경과조치 적용 여부 확인
	과점주주 여부	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 * '22.6.28. 이전 창업은 경과조치 적용 여부 확인

※ 위 표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반드시 규정 원문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law.go.kr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제②항에 따라 창업 제외 요건을 해소한 경우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창업 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이고, 양도-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 동종 업종,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완료, 양도기업의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

※ **동종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제11차)'를 기준으로 세세분류(코드번호 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
* 국가데이터처 통계분류포털 : kssc.kostat.go.kr

※ **과점주주** :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

※ **성실경영실패자** : 중진공의 재도전종합지원센터에서 성실경영심층평가(동종업종)를 통과한 자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1항 3호에 근거하여 성실경영실패자로 인정받은 건에 한함

* 재도전종합지원센터 : rechallenge.or.kr

※ 기존 개인사업자의 폐업사실은 **폐업사실증명, 총사업자등록내역** 등을 통해 확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26. 1. 1. 시행)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개인이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인인 중소기업자로서 개시하는 것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개인인 중소기업자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

나.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나.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성실경영실패자가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판정한 결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도입 또는 신기술의 적용 등으로 재기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개시하는 경우

4. 법인인 기업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이 경우 소유비율은 법인인 기업과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5. 법인의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과점주주가 되어 사업을 개시하는 것
6. 「상법」에 따른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회사의 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해당 중소기업을 창업한 것으로 본다.

1. 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로서 기존 사업과 다른 종류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기존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기존 사업을 폐업한 날
2. 제1항제4호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목의 사유가 발생한 날

가. 기존 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기존 법인과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중소기업의 주식을 합산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하를 소유하게 되는 경우

1) 제1항제4호 후단에 따른 소속 임원이 임원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
2) 기존 법인 또는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는 주식을 해당 중소기업의 다른 주주(해당 중소기업의 설립 당시 주주였던 자로 한정한다)에게 양도하는 경우

3. 제1항제5호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목의 사유가 발생한 날

가. 기존 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나. 기존 법인의 과점주주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

다. 기존 법인의 과점주주가 소유하는 해당 중소기업의 주식을 해당 중소기업의 다른 주주(해당 중소기업의 설립 당시 주주였던 자로 한정한다)에게 양도하여 해당 중소기업의 과점주주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

③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본인이 대표자가 되어 새로 설립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에 기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시킨 경우에는 그 법인은 기존 창업기업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 제1항제1호, 제2호나목,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세분류 기준에 따른다.

⑤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단, 본 공고에 따라 창업기업의 신청자격 기준은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참여 가능

붙임 5	패스트트랙 자격기준

□ 패스트트랙 해당 사업

구분	해당사업	자격요건
초기	'23~'25년 초기창업패키지(추경 포함)	참여기업 (중단·포기·실패 기업 제외*)
	'23~'24년 창업중심대학(초기 창업기업)	
재도전	'23~'25년 재도전성공패키지	

* 2026년 창업도약패키지(딥테크 특화형) 선정 및 협약 이후라도 중단·포기·실패 등 자격요건 미충족 시 선정취소 또는 협약취소될 수 있음

□ 패스트트랙 해당 기업 자격 요건

구분	세부 자격요건	증빙서류
①~③ 중 기본 1개	① '23~'25년 초기창업패키지 참여기업	- 증빙자료 불필요 (창업진흥원 확인)
	② '23~'24년 창업중심대학(초기) 참여기업	
	③ '23~'25년 재도전성공패키지 참여기업	
	* **단, 참여기업의 대표자, 기업명, 아이템이 동일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25년 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의 경우, 협약종료 전 중단·포기·실패 시 최종선정 제외	
①~③ 중 필수 1개	① 공고일 기준 **고용인원** (대표자 제외) **10인 이상** 기업	- 공고일 기준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이력 및 가입자명부
	② **연 매출액 20억원 이상** 기업(*'25년 결산 기준)	- 재무제표(손익계산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③ 공고일 기준 **누적 투자유치액 3억원 이상** 기업	- 투자계약서, 주주명부, 입금증 등

붙임 6	2026년 지방 우대 지역 분류

구분	인구감소지역(84개)	
	특별지원(40개)	우대지원(44개)
참고	창업기업 자부담율 10%	창업기업 자부담률 20%
서울	-	-
부산	-	-
대구	-	군위군
인천	-	강화군, 옹진군
광주	-	-
대전	-	-
울산	-	-
세종	-	-
경기	-	가평군, 연천군
강원	양구군, 화천군	고성군, 삼척시,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횡성군
충북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예산군, 태안군
전북	고창군,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전남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신안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함평군, 해남군	담양군, 영광군, 영암군, 진도군, 화순군
경북	봉화군, 상주시, 영덕군, 영양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고령군, 문경시, 성주군,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경남	고성군, 남해군, 의령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거창군, 밀양시, 산청군, 창녕군, 함안군
제주	-	-

* 그 외 비수도권 지역은 자부담률 25%

붙임 7	2026년 국세청 AI 스타트업 · 중소기업 세정지원 내용

※ '26년 창업도약패키지 AI 스타트업 선정기업 대상 지원하는 내용이나, 선정기업 중 국세청 지원대상에 일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선정기업 대상 별도 안내 예정

□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 일시적인 자금난 등*으로 **납부기한 등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 **개월 범위 내 승인**

* 재난·도난 등으로 심각한 손실을 입은 경우 등 (국징법 §13 ①)

○ 납부기한 등의 연장 신청시 **최대 1억 한도**로 **납세담보 면제***

* 사업에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등 (국징령 §16)

○ **체납기업**이 **강제징수 유예***를 **신청**할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승인**

* 사업을 정상 운영하여 체납액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국징법 §105 ①)

□ 경정청구 즉시 처리·환급금 조기지급

○ 경정청구 **접수 즉시** 환급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법인세·부가세·소득세 **경정청구 처리기한 단축** (기존 2月*→ 1月)

* 경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통지 (국기법 §45조의2)

○ 법인세·부가세 환급금 조기지급

□ 세무검증부담 최소화

○ (AI **스타트업**) 창업 후 5년 간 법인세 **정기세무조사 선정 제외**

○ (AI **중소기업**) 법인세 **정기세무조사 2년간 착수 유예**

* 탈세제보, 외부자료 수집 등을 통해 명백한 탈루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선정 가능

□ 기타

○ R&D 세액공제 사전심사·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신청 시 우선처리